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03
----------	------

2023년 1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3일 박성연 의원(찬성 11명)
2.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3. 상정일자 : 제321회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박성연 의원)

1. 제안이유

-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내용으로 IT·소프트웨어 기자재 관련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IT·소프트웨어 대응 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내용으로 IT·소프트웨어 기자재 관련 비용을 추가함(안 제11조제2항).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입법예고 (2023.10.26.~10.30.) 결과 : 의견없음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 운영비 지원의 내용으로 IT·소프트웨어 기자재 관련 비용을 추가하기 위함임.

2 주요사항 검토

- 현행 조례 제11조제1항¹⁾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현행 조례 제2항²⁾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임차보증금 등 설립비와 인건비, 관리비, 시설기자재 설치비,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의 운영경비로 명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시장이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해 IT·소프트웨어 기자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추가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임.

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비 등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시설기자재 설치비,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의 운영경비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시설기자재 <u>설치비</u> ,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의 운영경비로 한다. ③·④ (생략)	제11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설치비, IT·소프트웨어 기자재 관련 비용</u> ----- -----. ③·④ (현행과 같음)

- 서울시에는 여성발전센터 5개소와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로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총 23개소의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AI, 챗GPT 등 최신 트렌드에 맞는 교육부터 엑셀, 포토샵 등 실무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붙임1).
- 기술의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ICT에 대한 접근성과 사용에서의 성별 격차는 디지털 성별 격차 심화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³⁾, 코로나19로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이 필수로 자리잡으며 디지털 양성평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정보화수준 종합평가지표에서 여성은 96.4점, 남성은 103.6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초점] 팬데믹 시대의 디지털 양성평등', 2021.7.13.

점으로 남성이 더 높게 측정되었음.

- 뿐만 아니라 각 부문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측정되어 디지털 성별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022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종합>

구분	일반국민	여성	남성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	100	98.4	101.6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100	92.8	107.2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100	92.8	107.2
디지털정보화 수준(종합)	100	96.4	103.6

- 따라서 증가하는 디지털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여성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비 등의 지원에 IT·소프트웨어 기자재 관련 비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제3항4)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현행 조례 제11조제1항5)에서도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개정안을 통한 센터에 IT·소프트웨어 기자재 관련

4)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조례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보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침 등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여성발전센터 등 타 여성인력개발기관과의 형평성도 문제될 수 있어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해 보임.

3 종합 의견

- ICT에 대한 접근성과 사용에 대한 성별 격차는 디지털 성별 격차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이 필수로 자리 잡으며 디지털 양성평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증가하는 디지털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등의 지원에 IT·소프트웨어 기자재 관련 비용을 추가하기 위한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제3항⁶⁾과 현행 조례 제11조 제1항⁷⁾에서 이미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 가능한 경비를 조례에서 개별

6)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7)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① 시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적이고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침 등을 통해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
안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03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3일

발 의 자: 박성연 의원(1명)

찬 성 자: 곽향기, 구미경, 김영옥,
김춘곤, 윤영희, 이새날,
이성배, 이은림, 이종배,
채수지, 최진혁 의원(11
명)

1. 제안이유

-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내용으로 IT·소프트웨어 기자재 관련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IT·소프트웨어 대응 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내용으로 IT·소프트웨어 기자재 관련 비용을 추가함(안 제11조제2항).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설치비”를 “설치비, IT·소프트웨어 기자재 관련 비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시설기자재 <u>설치비</u>,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의 운영경비로 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11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설치비, I</u> <u>T·소프트웨어 기자재 관련 비</u> <u>용</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문서번호

2023101000000022

비대상사유서

요청인 : 박성연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손제승 주무관

접수일 : 2023.10.10.

회신일 : 2023.10.13.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운영비 등의 지원)제2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하나 기추진 사업(붙임 참조)이므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 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붙임] 2023년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사업목적

- 여성 취업 확대를 위한 특화된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 취업 및 창업 정보제공, 알선, 사후관리 등 여성의 취창업 촉진사업

사업내용

- 시설현황 :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등 18개소
- 사업내용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 여성의 생애 주기별 진로설계,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 총사업비 : 6,098,826천원(전액 시비)

□ 산출근거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3년 예산내역	
사무관리비	○ 정책전문가 자문회의	= 2,100
	○ 여성인력개발기관 외부전문가 수당 250,000원*24개소*1명	= 6,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여성인력개발지원 업무추진 11,700,000원*1회	= 11,700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 4,869,026
	- 인건비, 운영비(18개 센터*12개월)	= 4,228,850
	- 임대월세지원 53,348,000원*12개월	= 640,176
	○ 취업활성화 사업비 16,000,000원*18개소	= 288,000
	○ 여성인력개발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 20,000,000원*4개월	= 80,000
	○ 임차료 추가지원 182,000,000원	= 182,00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임차보증금 증액 300,000,000원*1개소(성동)	= 300,000
	○ 노후 컴퓨터 교체 등 20,000,000원*18개센터	= 360,000

자료 : 2023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사업설명서